

기안응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법무181.6-27- (전화번호)	전 권	관	
처리기간				
시행일자				1975. 11
보존년한				
보조기관	제1부서장 기획관리관 법무담당관	협조	 	
기안책임자	김홍시	1975. 11.		

원안내무국시민과보관

원본대조필

경수참	유선조	각안 참조	발신	통제
-----	-----	-------	----	----

제 목 서울특별시 기획관리관 운영규칙 개정 규칙 공포

제 1안

수 신 내무결재

제 목 같은 것

1. 법무 181.6-865(가. 11. 7) 호로 국무총리에 사전 보고한 서울특별시 기획관리관 운영규칙 개정 규칙을 공포 조치 통보이던 것 별첨과 같이 공포해내라 함이다

첨부 서울특별시 기획관리관 운영규칙 개정 공로안 1부 끝

제 2안

수 신 부회공보실장

제 목 같은 것

1. 서울특별시 기획관리관 운영규칙 개정 규칙을 별첨과 같이 공로케로 하였으니 사오에 게재 공로 할 것

2. 서울특별시 기획관리관 운영규칙이 개정 공로됨의 동시에 등. 규칙 제 24조이 무거. 상정 명의로

0201-1-8A (갑) 1969. 11. 10 승인

190mm x 268mm 인쇄용지 (2급) 60g/m²
소년기술원 (92-0436)

0002

각 간행물이 게재되는 일체의 인쇄, 운반 및 관보
시보 게재 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기획관리관 (법무담당
관)의 심사를 필한후 게재하도록 시행에 철저히 기할
것이며 심사를 필하지 않은사항이 간행물에 게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것.
첨부 서류특별시 기획관리관 운영규칙 개정공포안 1부 끝

제 3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부 같은 것

1. 서류특별시 기획관리관 운영규칙을 개정규칙을
별첨과같이 공포하였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없도록 할것.

가. 법령의 정비 (제 개정)를 중앙 관계우처에 권탁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기획관리관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을것. (규제 242)

나. 시장면역으로 된 인쇄, 운반 등의 관보 시보
게재 사항은 사전에 반드시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을것. (규제 242)

다. 예외사항을 갖는 다른 업무의 관련된 각종 지침, 발령
지시, 훈칙 등은 사전에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을것. (규제 242)

라. 국장, 과장은 예외를 현행 법령임 및 자치법규의 관
의 책임을 지성하여 본관 관리에 철저히 기할것이며 기획관리관은
수시로 관리, 운용 상태를 지도, 점검, 감독 할것. (규제 242의2)

마. 자치법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기획관리관
이 정비안의 제출을 요구 할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관련국, 실외에서는 정비안을 제출할것.
(규제 제 242)

바. 본에 법령에 대하여 중앙 주무우처에 해석을 구할때
에는 사전에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받을것.

첨부 서류특별시 기획관리관 운영규칙 개정안 1부 끝.

.....

서울특별시 기획관리관운영규칙증정령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구 라 춘

1975년 11월 14일

4

0004

제29조의 2(지도) (1) 기획관리관은 제22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 지도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이행치 아니한 해당업무 담당자 및 본청장의 직할역은 업무 종료 시에하여 계속하여 이행되지 아니 함에 대한 징계처리가 가능하게 요구를 의의 할수 있다.

(2) 전항의 의의를 받은 징계 주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요구 처리 하여야 한다.

(3) 간행물의 게재를 주관하는 주무실국에서는 제24조에 의한 심사를 밟아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간행물에 게재 하여서는 아된다.

부: 칙

이 칙칙은 응급한 필요에 의해 시행한다.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법무 181.6- (전화번호)	진 김 규 정 조 한 진 원 서 영
처리기간	시 강	
사행일자	1975. 11.	
보존년한		
보조 기 관	제1부 시장 기획관리관 법무담당관	업 제2부 시장 조
기안책임자	김 광 서	가. 11. 6
경 유 수 신 합 계	관 안참 조	발 신
제 목	서울특별시 기획관리관 운영규칙중 개정규칙	
제 1안	수신. 내부결재	
제 목 동 건	<p>1. 도시기능의 팽창과 주민의 행정수요증대로 인한 각종 지방행정의 법규적 성질의 규범을 지도적으로 체계화 하며 일반의 구체적 생활이까지 미치는 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서 별첨과 같이 서울특별시 기획관리관 운영규칙을 개정하고 소정기일내에 공포하고자 합니다.</p>	
첨부	<p>1. 서울특별시 기획관리관 운영규칙중 개정규칙안 1부. 2. 개정이유 1부. 3. 조문 대비표 1부.</p>	
제 2안	수신. 국무총리	
참조	행정조정실장	

결재
11. 6
시 강

검인
11. 7

첨서
3

판인

발송
7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기획관리관은 영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기획관리관 은 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과장"을 "담당관"으로 한다 이하 같다.

제22조 제1항 각호의 "3통"을 "4통"으로, 제2항중 "법무과장"을 "기획관리관(법무담당관) — 이하 같다 —"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획관리관은 법령(자치법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비(지.계.폐 이하 같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법령의 주관 국.실 장에 통보하여 정비안을 마련, 제출토록 할 수 있다. 이대 통보를 받은 주관 국실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비안을 지정한 기일내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23조 제5항 제3호중 "다만 내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삭제한다.

제2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 실과에서 작성한 문서중 시장명의로 나가는 고시,공고(안내문을 포함한다) 예규 및 관보, 지보 게재사항과 예규주 성질을 갖는 데민업무와 관련된 각종 지침, 방침, 지시, 준칙등은 사전에 반드시 기획관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2) 각 주무국에서 법령의 정비를 중앙관계부처에 건의 할 때에는 사전에 반드시 기획관리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 2(법규집 관리)(1) 국.실 과장은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및 자치법규집의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 관리케 하여야 한다.

(2) 기획관리관은 주시로 전향의보관, 관리및 운용 상패를 점검 지도감독 할수 있다

제26조 제1항 본문중 "다만 경미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를 추가하고 제4호를 "응소 및 상소의 포기"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일차 경과 처리하며 계속하여 이행되지 아니 할 때는 징계처리기관이 징계
요구를 의뢰할수 있다.

(2) 전항의 의뢰를 받은 징계 주무기관은 특별한사유가 없는한 징계요구 처
리 하여야 한다.

(3) 간행물의 게재를 주관하는 주무 실과에서는 제24조에 의한 심사를 필하지
아니한 것이 더하여간행물이 게재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칙칙은 공포한지 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1. 국민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규적 사안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를 강화하여 발전적인 자치 행정의 균형적 개선을 기하며
2. 행정수요의 증대와 구체적 법규범의 세분화에 따른 각종 법령 정비 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제도의 강화와
3. 서정쇄신을 위한 지도적 불합리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자체적 규정
4. 일선 행정 수행의 근간이 되는 법령집의 관리 운용 제도 보강